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국무원, <안정적인 경제발전 추진계획> 발표

■ 1월 28일, 리커창 총리는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올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동 회의의 주요내용으로 △소비 확대 : 자동차 판매를 추진하고, 다양한 판촉행사를 통해 소비를 회복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 중국내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를 회복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고, 수출세 환급 등 정책을 시행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해외 창고 등의 발전을 촉진 △대외 무역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확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신규 <외국인 투자 산업목록>을 촉진 △외자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대 프로젝트의 착공을 추진하는 것 등임

자료원 : 국무원

http://www.gov.cn/premier/2023-01/28/content_5738997.htm

2 中 발개위, <중소기업 대상 입찰 관련 7가지 조치> 발표

■ 2월 6일, 발개위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대상 입찰 관련 7가지 조치>《国家发展改革委等部门关于完善招标投标交易担保制度进一步降低招标投标交易成本的通知》를 발표함

- 7가지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발주처는 낙찰자에게 현금 보증금, 은행 보증서 등 비현금 보증방식을 모두 허용해야 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보증금 또는 기타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 △입찰 서류에 입찰 보증방식, 보증금 반환시간 등을 명시하고 법에 따라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현금 방식으로 보증금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입찰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상 원가절감을 위한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입찰보증금을 감면하고, 정부 투자사업 이외의 입찰사업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관리 △각종 보증금을 불법으로 압류 또는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되며, 현금으로 보증금을 제출하는

경우 보증금의 원금 및 은행 예금 이자를 동시에 반환 △입찰 및 입찰 보증금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 등임

자료원 : 발개위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302/t20230206_1348365.html

3 中 문화관광부, 〈중국 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 재개〉 발표

- 1월 20일, 중국문화관광부는 시범적으로 〈해외 단체 여행 재개에 관한 공고문〉(《关于试点恢复旅行社经营中国公民赴有关国家出境团队旅游业务的通知》)을 발표함
 - 동 공고문에 따라 2월 6일부터 중국 여행사들은 시범적으로 중국 자국민의 해외 단체 관광 및 '항공권 + 호텔' 사업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음
 - 한편,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해외 관광업무 재개 국가명단은 총 20개국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등임

자료원 : 중국문화관광부

https://zwgk.mct.gov.cn/zfxxgkml/scgl/202301/t20230120_938772.html

4 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조치〉에 대해 의견수렴

- 2월 1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조치〉(《首次公开发行股票注册管理办法》)를 발표하여 2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주식발행 등록제는 기업이 IPO를 추진할 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인허가 필요 없이 각종 서류를 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만 하면 바로 상장 가능한 제도임.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해당 IPO개혁은 시장에 선택권을 제공하고 IPO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밝혔음
 - 한편, 나스닥·코스닥과 같이 중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시장인 상하이증권거래소 쿵창반(科创板)이 2019년 7월 22일 주식발행 등록제를 첫 시범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2020년 8월 24일 선전증권거래소 창예반(创业板), 2021년 11월 15일 베이징증권거래소가 주식발행 등록제 운영을 개시함

자료원 : 국무원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302/t20230201_3864855.htm

5 中 公업정보화부, <통신장비 진입규제 완화> 발표..3월 1일부터 시행

■ 2월 6일, 공업정보화부는 <통신장비에 대한 진입규제를 조정하는 공고문>(《工业和信息化部关于电信设备进网许可制度若干改革举措的通告》)을 발표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동 공고문의 주요내용으로 △유선전화단말기, 무선전화단말기, 팩스기, 모뎀 공유기, 무선호출기, ISDN단말기,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멀티미디어단말기, ATM교환기, 콜센터장비 등 11종의 통신 장비에 대해 진입 규제를 완화시켜, 기존에 시행해 왔던 '네트워크 진입 허가관리'(进网许可制度)품목에서 제외 △네트워크 진입 허가관리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통신장비 제조업체는 <제품 품질법>(《产品质量法》), <표준화법>(《标准化法》), <통신 규정>(《电信条例》) 등 규정에 따라 제품에 사용되는 통신 표준을 명시하고, 분기별로 공업정보화부 플랫폼 (<https://jwxk.miit.gov.cn>) 을 통해 새로 출시된 제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작성 △위성 인터넷 장비 및 가상 장치는 현행 '네트워크 진입 허가관리'대상에 포함시킴 △심사 기간을 규정 : 기업이 제출한 '네트워크 진입 허가관리' 신청에 대해 15일 (근무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 등임

*네트워크 진입 허가관리 제도 (进网许可制度) : 중국은 공중 통신망에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장비 및 통신단말기에 대해 공업정보화부에서 발급한 네트워크 진입 허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진입 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 장비는 공중 통신망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중국내에서 판매 불가함

자료원 : 공업정보화부

https://www.miit.gov.cn/jgsj/xgj/sbgl/art/2023/art_0fc38f3df47b4e818f93c1538afde3c4.html

6 中 公업정보화부, <'로봇+' 활용 계획> 발표

■ 1월 19일,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부처는 공동으로 <'로봇+' 활용 계획>(《“机器人+”应用行 动实施方案》)을 발표함

- 동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2025년까지 제조업 로봇을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시키며 또한 서비스 로봇 및 특수 로봇 산업의 활용을 추진 △농업, 건축업, 에너지, 물류, 의료, 실버산업, 교육 등 분야의 로봇 활용을 추진 △로봇 활용을 위한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것 등임

-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艾媒咨询)가 발표한 <2022년 중국 로봇산업 발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중국 로봇 산업 시장규모는 6,000억 위안(약 111조 원)에 육박하고 2021~2027년 연 평균 복합성장률은 28.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자료원 : 공업정보화부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z/art/2023/art_c2a9bacca5114e42b5e16ed5277923a8.html

<https://www.robot-china.com/news/202212/02/75973.html>

7 美, 중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반덤핑 조사 개시

- 2월 1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제1차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
- 동 건의 HS 코드는 5503.20.0025 등이며, 미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 2018년 1월 17일, 2018년 5월 24일에 최초로 중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내린바 있음

자료원 : 무역구제정보망

<http://cacs.mofcom.gov.cn/cacscms/article/ckys?articleId=175678&type=1>

8 美, 중국산 마그네슘에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개시

- 2월 1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분말형 마그네슘(Pure Granular Magnesium)에 제4차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
- 동 건의 HS 코드는 8104.3000 등이며 앞서 지난 2001년에 미국 상무부는 최초로 중국산 분말형 마그네슘에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린바 있으며, 중국 기업의 반덤핑 관세 부과율은 24.67%~305.56%임
- 한편, 미국 상무부는 2007년, 2012년, 2018년에 이어 각각 3회에 걸쳐 중국산 분말형 마그네슘에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조치를 내린바 있음

자료원 : 무역구제정보망

<http://cacs.mofcom.gov.cn/cacscms/article/ckys?articleId=175680&type=1>

<http://www.cqjz.com.cn/html/jcni/gjzx/gjlmzx/hydt/12/05/1086.html>